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78
----------	-------

발의연월일 : 2024. 7. 28.

발의자 : 안도걸 · 민형배 · 문대림

조인철 · 서삼석 · 이용선

윤준병 · 손명수 · 문금주

조계원 · 정진욱 · 양부남

서미화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연간 합산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장기투자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87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8(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 지급받은 제1호 각 목에 따른 배당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40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당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0 이상이면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총액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의 배당소득

2. 세율

가. 해당 과세기간의 분리과세대상배당소득 합계액 중 2천만원 이

하인 분: 100분의 9

나. 해당 과세기간의 분리과세대상배당소득 합계액 중 2천만원 초

과 3억원 이하인 분: 100분의 20

다. 해당 과세기간의 분리과세대상배당소득 합계액 중 3억원을 초

과하는 분: 100분의 3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분증권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분리과세대상배당소득 및 배당성향의 계산방법, 원천징수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7조의7”을 “제87조의7, 제87조의8”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고배당기업의 지분증권”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87조의8(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2</u></p> <p><u>02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u></p> <p><u>지급받은 제1호 각 목에 따른</u></p> <p><u>배당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u></p> <p><u>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u></p> <p><u>리과세대상배당소득”이라 한</u></p> <p><u>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u></p> <p><u>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u></p> <p><u>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u></p> <p><u>「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u></p> <p><u>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u></p> <p><u>따른 세율을 적용한다.</u></p> <p><u>1.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u></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p> <p>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p> <p>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p> <p>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p> <p>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p> <p>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p> <p>당성향이 100분의 40 이상</p> <p>인 법인으로부터 받는 지</p> <p>분증권의 배당소득</p>

나.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
0분의 20 이상이면서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 총액
의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
도의 배당금 총액의 증가
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범
인으로부터 받는 지분증권
의 배당소득

2. 세율

가. 해당 과세기간의 분리과
세대상배당소득 합계액 중
2천만원 이하인 분: 100분
의 9

나. 해당 과세기간의 분리과
세대상배당소득 합계액 중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인 분: 100분의 20

다. 해당 과세기간의 분리과
세대상배당소득 합계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분: 100
분의 30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분증권 내역을 해당 거

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
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분리과세대상배당소득 및 배당성향의 계산방법, 원천징수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
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변
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
용의 변경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공제금
· 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이
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
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인출

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 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 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 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 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 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 <u>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u> 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 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에 따른 특정사회 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 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 권, 장기주택마련저축, 청년우 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u>공모</u> <u>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u> <u>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u> 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 예탁금, 재형저축, 고위험고수 익채권투자신탁, 장기집합투 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 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 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	1. ----- <u>제87조의7, 제87조의8-----</u> ----- <u>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u> <u>구의 집합투자증권, 고배당기</u> <u>업의 지분증권-----</u>

